



- 당사는 임차인이 차량에 근거하여 추가보험금을 당사에 지불한 후에, 해당 주차위반과 관련된 범칙금의 납부, 또는 공소 개구 혹은 가장 과다소의 안중에 따라 당사에 법적 위반금이 청구되었을 경우, 주차위반금을 일괄적으로 이행하는 데 동의합니다.
- 당사가 차량의 합치 위반금 납부 명령을 받은 경우, 또는 임차인이 당사가 지정한 기일까지 통행에서 규정된 청구금액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당사는 임차인의 이름, 생년월일, 운전면허번호 번호 등을 전행할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임차인은 피해 공과합니다.

#### 제18조(GPS기능)

- 임차인 및 운전자는 렌터카에 전자기 위치추적 시스템을(이하, 'GPS기능'이라 함)에 탑재할 수 있으며, 당사가 정한 시스템에 렌터카의 현재 위치, 통행경로 등의 기록되는 것 및 당사가 해당 기록정보를 미래와 같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대여계약 종료 시 렌터카가 일정한 장소에 변질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 제 25조 제 1항 4호에 정해진 경우, 그 밖에 렌터카의 관리 또는 대여계약의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하고도 인정되는 경우, 렌터카의 현재 위치 등을 확인하기 위해
  - 임차인 및 운전자에게 제공되는 상품, 서비스 등의 품질 향상, 고객만족도의 향상 등을 위한 마케팅 분석에 이용하기 위해
- 임차인 및 운전자는 당사가 통행에서 규정하는 기록 정보를 임차인 및 운전자 개인을 식별 및 추적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한 뒤 토요타 자동차에 제공하는 것, 토요타 자동차가 해당 기록 정보를 자동 운전, 안전 운전 기술, 지도 생성 기술을 위한 연구 개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임차인 및 운전자는 차량의 GPS 기능에 의해 기록된 정보에 관하여 당사가 법원에 근거한 공제를 요구 받거나 법원, 행정기관 그 밖의 공적 기관으로부터 공과 청구, 공과 명령을 받았을 때,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이를 공개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 제19조(드라이브 레코드)

- 임차인 및 운전자는 렌터카에 드라이브 레코더가 탑재할 수 있으며, 임차인 및 운전자의 운전 상황에 기록되는 것 및 당사가 해당 기록 정보를 미래와 같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발생 시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 렌터카의 관리 또는 대여계약의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임차인 및 운전자의 운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 임차인 및 운전자에게 제공되는 상품, 서비스 등의 품질 향상, 고객만족도의 향상 등을 위한 마케팅 분석에 이용하기 위해
- 임차인 및 운전자는 당사가 통행에서 규정하는 기록 정보를 임차인 및 운전자 개인을 식별 및 추적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한 뒤 토요타 자동차에 제공하는 것, 토요타 자동차가 해당 기록 정보를 자동 운전, 안전 운전 기술, 지도 생성 기술을 위한 연구 개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임차인 및 운전자는 차량의 드라이브 레코더에 의해 기록된 정보에 관하여 당사가 법원에 근거한 공제를 요구 받거나 법원, 행정기관 그 밖의 공적 기관으로부터 공과 청구, 공과 명령을 받았을 때, 필요한 한도 내에서 이를 공개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 제20조(ETC카드 대여서비스)

-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ETC카드 ETC카드 대여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아래 사항에 동의하고 이용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용기간 중의 통행요금에 렌터카 반납 시에 ETC카드의 IC칩에 기록된 정보를 전액 정산한다.
    - IC칩에 기록되지 않은 요금 조정 또는 환입이 있습니다. (통행금지 때의 환승 요금 조정, 일부 도로사업자의 ETC 할인 서비스)
  - 이해의 갈이 후일 통행요금 미납이 반영되었을 경우 추가로 정산한다.
    - 일고 신고하지 않은 사용요금에 반영된 경우 ETC카드 또는 장기간 이상으로 통행이여야만 금액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 일정할 이유로 통행이 확인이 안 되는 도요타 렌터카시스템에 반납한 경우
  - ETC카드의 분실 및 도난 등이 발생한 경우는 당사에 연락할 것 동시에 그에 개인인 제3자의 무정한 사용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배상한다.
  - 임차인 및 운전자의 과실 등에 의한 도난 등에 대해서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대응(단, 교통사고로 인정되는 것은 제외)하며, 당사는 일정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3자에게 ETC카드를 대여하지 않는다.
  - 임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렌터카와 ETC카드를 반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사가 도로사업자에게 대해 ETC카드의 이용정착을 의뢰하는 것을 승인한다.
  - 도로사업자로부터 ETC카드 이용자에 대한 문의가 들어온 경우(임차 기간 만료 후도 포함), 요청에 따라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다.

## 제5장 한 환

#### 제21조(임차인의 반환 책임)

- 임차인은 렌터카를 임차기간 만료시까지 소정의 반환장소에서 당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 임차인은 반제지만 및 그 외 불가항적 사유로 인하여 임차기간 후에 렌터카를 반환할 수 없을 경우, 즉시 당사에 연락하여 당사의 지사에 따릅니다.

#### 제22조(렌터카의 확인 등)

- 임차인은 당사에 입차해, 렌터카의 통행과 사용으로 인한 장애 및 파손 또는 임차인 및 운전자의 과실로 볼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상을 제외하고, 인도받았을 때의 상태 그대로 반환해야 합니다.
- 임차인은 렌터카를 반환하는 데 있어서, 렌터카 내에 임차인 및 운전자 또는 동승자의 유류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반환해야 합니다.

#### 제23조(렌터카의 반환 시기 등)

- 임차인은 제1조에 의거하여 임차기간을 연장할 경우, 변경후의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대외요금과 변경전 대외요금과 초과요금을 합산한 요금 가운데, 어느 쪽이든 낮은 금액의 요금을 지불한다.
- 임차인은 제1조에 의거한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차기간을 초과하여 반환했을 경우, 전항의 요금에 대하여 초과시간에 해당하는 초과요금이 해당될 수 있으므로 지불해야 합니다.

#### 제24조(렌터카의 반환장소 등)

- 임차인은 제1조에 의거하여 소정의 반환장소를 변경할 경우, 반환장소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회송을 위한 비용(이하 '회송비용'이라고 함)을 부담해야 합니다.
- 임차인은 제1조에 의거한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소정의 반환장소 이외의 장소에 렌터카를 반환하는 경우, 회송비용의 배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 제25조(렌터카가 반환되지 않을 경우의 조치)

- 당사는 임차인이 다음(으)라 후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 고소를 위한 등의 법적 절차 외에도 GPS 기능을 이용하여 렌터카와 소재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동시에 (사)인근 렌터카 협회에 불만신고 피해 보고 및 전행할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임차인은 이에 동의합니다.
  -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당사의 반환 장부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 임차인의 소재가 불분명한 등 불만현이라고 인정된 경우
- 전항의 각 후의 경우, 임차인은 당사가 임차인의 현재 및 렌터카의 회수에 소요한 비용 등을 당사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 제26조(대여 정보의 등록과 이항의 합의)

- 약관 제4부의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규정에 관계없이, 임차인은 다음의 각 후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의 이름, 생년월일, 운전면허증 번호 등을 포함한 객관적인 대여 사실에 근거한 정보(이하 '대여 정보'라고 함)가 전행할 시스템 및 대여 주차위 리스트에 과문 업까지 없는 기간 동안 등록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당사가 지칭하는 기밀처리, 제3조 규정에서 규정하는 주차위반금을 당사에게 지불하지 않은 경우
  - 전조 제1항의 각 후에 해당하는 경우
- 약관 제4부의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규정에 관계없이, 임차인은 다음의 같은 사항에 동의합니다.
  - 전행할 시스템에 등록한 대여 정보가 (사)인근 렌터카 협회 및 기타 제 3도모부터 렌터카 협회와 그 회원 사업자에게 이용되는 것
  - 대여 주차위 리스트에 등록된 대여 정보가 도요타 자동차 주식회사 및 도요타 렌터카시스템에 이용되는 것

## 제6장 고장, 사고, 도난시의 조치

#### 제27조(렌터카의 고장)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중에 렌터카의 이상 또는 고장이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당사에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당사의 지사에 따라야 합니다.

#### 제28조(사고)

-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중에 렌터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사고의 장소에 관계없이 법률상의 조치를 취할 것 동시에, 다음의 규정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즉시 사고 상황 등을 당사에 보고하고 당사에 지사에 따를 것.
  - 현장의 지사에 근거하여 렌터카 주차를 하는 경우, 당사가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 및 당사가 지정한 공간에서 실시할 것.
  - 사고의 관여에 당사 및 당사가 제3자인 대여인의 조사에 협력하고, 당사 및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서류 등을 지체없이 제출할 것.
  - 사고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를 및 그 외의 협의를 할 경우에는, 미리 당사의 승낙을 받을 것.
-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전항의 의뢰도 자신의 책임하에 사고의 처리 및 회송을 해야 합니다.
- 당사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를 위해 사고의 처리에 대한 조언을 할 것 동시에 그 해결에 협력합니다.
- 당사는 사고 발생 시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블랙박스 또는 차량 탑재형 사고기록장치, 혹은 압력 모구가 장착된 차량의 충격이 발생하거나 충격등이 있던 경우 동차 상충을 기록합니다.
- 당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항의 각 후의 기록을 검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 제29조(도난)

-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사용중에 렌터카의 도난이 발생한 경우 및 그 외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에서 규정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즉시 가까운 경찰에 신고할 것.
  - 즉시 피해상황 등을 당사에 보고하고, 당사의 지사에 따를 것.
  - 도난 및 피해와 관련하여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하고 있는 보험회사의 조서에 협력하고, 당사 및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서류 등을 지체없이 제출할 것.

#### 제30조(사물 출납으로 인한 대여계약의 종료)

- 임차기간 중에 고장, 사고, 도난 및 그 외의 사유(이하 '그장 등'이라고 함)로 인해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여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임차인은 전항의 경우 렌터카의 전수 및 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당사는 이미 수행한 대외요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고장 등이 제3항 또는 제5항 규정된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고장 등(제30항 소정의 경우) 및 그 외의 사유(제30항 제1항의 경우)로 인해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대여계약의 종료 후에 당사는 제3조 제1항을 준용하고 임차인이 전항의 대외 렌터카를 제공받지 않을 경우, 당사는 이미 수행한 대외요금을 전액 반환합니다. 또한 당사가 대외 렌터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도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 고장 등이 임차인이나 운전자 또는 당사 그 어느 쪽에도 책임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경우, 당사는 이미 수행한 대외요금에서 대외한 날로부터 대여계약이 종료된 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대외요금을 공제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 임차인은 본 조에서 규정하는 조치를 제외하고, 렌터카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당사에게 본 조에서 규정된 것 이외의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단, 고장 등이 당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제7장 배상 및 보상

#### 제31조(임차인에 의한 배상 및 영업 보상)

- 임차인은 임차한 렌터카의 사용에 있어서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당사의 렌터카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외 대여 렌터카를 포함합니다.제 손해배상 임의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단, 임차인 및 운전자의 과실로 볼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전항에 따라 임차인이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사고, 도난,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고장, 렌터카의 오손, 악취 등으로 인해 당사가 그 렌터카의 이용이 불가능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요구된 합에서 규정된 배에 따르는 것으로 하여 임차인은 이를 지불해야 합니다.
-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임차한 렌터카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외 대여 렌터카를 포함(이하 '대외 렌터카'라고 함)에 사용해야 합니다.
  - 한 각항에 상응하여, 극심한 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 재정 원조 등에 관한 법률(1962년 법률 제150호) 제2조에 근거하여 극심 재해라고 지정한 재해(이하 '극심 재해')라고 할 경우, 임차인 또는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가 해당 극심 재해로 지정한 지역에서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일출시(이하 '파손 또는 그 조의 피해를 입은 렌터카'에 관련된 것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제32조(보험)

- 임차인이 약관 및 제책에 근거하여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및 운전자가 전조 제3항의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당사가 렌터카에 관하여 체결한 손해보험 계약에 의거하여 다음의 한도액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단, 그 보험약관의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보험금을 지급되지 않습니다.
  - 내인 보상 1인당 무제한(자동차 손해배상 책임제한 포함)
  - 타인 보상 1사고당 무제한(한도액 5만원)
  - 차량 보상 1사고당 시가액(비상한액) 5만원
  - 비스 및 대외 화물차 10만원
  - 인신상해 보상 2인당 3000만원까지
-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손해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해 지급된 보험금액을 넘기는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당사가 전항에서 규정된 임차인 또는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을 지출할 경우, 임차인은 즉시 당사의 지불명령 당시에 반제해야 합니다.
- 제출에서 규정된 보험금 반환책임상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 및 당사에 관해 보험금을 지불할 수없는 당에 부담으로 한다. 단 그 손해 발생의 지불이 없었을 경우에는 임차의 부담으로 한다.
- 제1항에서 규정된 손해보험 계약의 보험료 상당액은 대외요금에 포함합니다.

## 제8장 해 제

#### 제33조(대여계약의 해제)

당사는 임차인이 임차기간 중에 악과 및 제책을 위반한 경우, 아무런 통지 및 회고 없이 대여계약을 해제하고, 그 즉시 렌터카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이미 수행한 대외요금에서 대여분위 해제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대외요금 및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 배상액을 공제한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 제34조(통의 책임)

- 임차인은 임차기간 중미리 할지라도 당사의 통의를 받아 대여계약을 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이미 수행한 대외요금에서 대외한 날로부터 반환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대외요금과 해당 수수료의 합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 임차인은 전항의 통의를 할 경우, 다음과 같은 계약 수수료를 당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 계약 수수료: (해제된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기본요금) - (대외일로부터 반환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본요금) ×50%
- 전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임차인이 여객 대리점을 공문한 해제에 근거해 대여기간을 종료할 경우, 부대 수수료는 예정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대외요금에서 '대외일로부터 반환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대외요금'을 공제한 금액 또는 5,500원 중 낮은 금액으로 합니다.

## 제9장 잡 칙

#### 제35조(상계)

당사는 약관 및 제책에 근거하여 임차인에게 금전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임차인이 당사에게 부담해야 할 금전 채무와 인제든지 상계를 수 있습니다.

#### 제36조(소비세)

임차인은 약관 및 제책에 근거한 거래에 부과되는 소비세(지방소비세를 포함합니다.)를 당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 제37조(지연 손해금)

임차인 및 당사는 약관 및 제책에 근거한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연할 경우, 상대방에게 연 16.6%의 이율로 지연 손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제38조(대외 대여 사업자)

당사를 대신하여 다른 사업자가 렌터카를 대여해 줄 경우(해당 사업자를 '대외 대여사업자'라고 함), 위한 가운데 당사라고 규정된 공통 대외 대여사업자로 대체하여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 취급에 대하여, 제1조, 제16조, 제27조, 제29조(도난, 렌터카의 고장, 사고, 도난 등)에 발생한 경우와 연락처는, 당사 및 대외 대여사업자 포함. 제39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제39조(준거법 등)

- 준거법은 일본법으로 합니다.
- 일본어인 약관과, 일본어 및 그 외의 일본어만 미하여 약관에 서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일본어만 약문을 우선으로 합니다.

#### 제40조 ( 중요사항 정보 제공 )

- 당사는 임차인에게 약관 및 제책 중 임차인의 손해 배상 책임 및 영업 보상 책임의 내용, 당사의 보험 또는 보상 제도의 내용 및 조건분만 아니라, 임차인이 취해야 하는 고장, 사고, 도난 시의 조치, 위반 주차 위반 시의 조치 등의 중요사항에 대한 정보를 당사에게 공개하고 임차인 위문 표현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임차인은 약관 및 제책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제41조(약관 및 제책의 게시 등)

당사는 약관 등을 이해 중 어떠한 정보로부터 임차인에게 게시합니다.

- 당사의 영업 정보에 대하여 게시할 때 불필요한 게시(디스플레이 및 전자기기)에 표시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출제하기 등에 보기 있도록 게시.
- 서면(전자메일, 등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게시
- 당사가 발행하는 공문서, 요금부 등을 통해 적힌 등의 게시를 임차인에게 제공합니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동일한 조치를 취합니다.

#### 제42조(군할 제관소)

이 약관 및 제책에 공제하여 권리 및 의무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적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